



## 법인식별기호(LEI) 도입과 향후과제

### 목차

#### I. 서론


1. 도입 배경
2. 법인식별기호(LEI)

#### II. 국제논의 동향

1. 추진경과
2. 글로벌 LEI 시스템(GLEIS) 구조
3. 예비적 지역운영기구(Pre-LOU)

#### III. 향후 과제

1. LEI 사용 범위 확대
2. 국내 지역운영기구(LOU) 과제



## 법인식별기호(LEI) 도입과 향후과제

### I. 서론<sup>1)</sup>

#### 1. 도입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분야에서 금융규제가 도입되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장외거래(over-the-counter, 이하 “OTC”) 파생상품(derivative)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증권화·유동화 등으로 복잡화된 파생상품이 장외에서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거래상대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측면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OTC 파생상품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권고안이 승인되었다. 동 권고안에서는 OTC 파생상품을 표준화(standardisation)하고 중앙청산소(CCP)를 활용하여 결제·청산하는 한편,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ies, 이하 “TR”)에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보고하며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Platform Trading)에서 거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OTC 파생상품 규제 중에서 법인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 이하 “LEI”)와 관련된 규제는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이다. 금융회사는 ‘누가(who)와 어떤 OTC 파생상품을(what) 어떻게(how) 거래하였는지’에 대해 TR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어떤 OTC 파생상품(what)을 보고대상에 포함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정책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이미 미국(12.8월) 및 유럽(13.8월) 등은 파생상품중 스왑(swap) 거래 보고를 의무화한 바 있는데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향후 보고대상거래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법인식별기호(LEI)는 TR 보고와 관련하여 ‘누가(wh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Legal Entity)에게 고유의 20자리 기호(Identifier)를 부여함으로써 거래상대방 파악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1) 일부 내용은 임형석(2014)을 활용 하였다.

## 2. 법인식별기호(LEI)

법인식별기호(LEI)는 20자리 코드(code) 부가 참고자료(attached reference data)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자리 코드는 '12.5월 제정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규격(17442)에 따라 Alpha-Numeric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123400BB6127DOKPL392 등으로 표시된다. 이 중에서 1~4자리(prefix)는 LEI 발급기관 고유번호이며, 5~6자리는 예비적으로 확보된 자리이다. 그리고 7~18자리는 임의의 alphanumeric 조합이며 19~20자리는 검사숫자이다. 검사숫자는 기본코드 내 알파벳을 미리 정해진 숫자로 전환한 후, 검사숫자를 포함한 전체 숫자를 '9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이다.

〈표 1〉 LEI 코드 구조

기본 코드			Check Digit(2)
prefix(4)	예비(2)	Entity-Specific(12)	
■■■■	■■	■■■■■■■■■■■■■■■■■■■■	■■
발급기관 고유번호	00(숫자)	임의의 alphanumeric 조합	검사숫자

LEI 코드는 20자리의 알파벳·숫자의 조합에 불과하므로 코드에 해당되는 법인을 실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체를 실제로 설명해 주는 부가 참조자료(Level 1 및 Level 2)가 필요하다.

이중에서 Level 1 자료는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 법인 이름, 소재지, LEI 최초 부여일 등에 대한 정보이며, Level 2 자료는 감독당국만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 법인 지분구조(모회사, 자회사 등) 등에 대한 정보이다.

Level 1 자료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자료인 만큼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에 Level 2 자료의 경우는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 중이다. 예를 들면 모회사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도 자회사에 대한 지분 규모 등에 대해 국가 간 기준이 다른 데다가 각국별로 법인정보 보호 이슈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 LEI 부가 참조자료 예시

LEI 코드	부가 참조 자료		비고
1234PQBB6127DOKPL392	법인의 공식명칭	Level 1 (확정)	일반이용자 이용 가능
	법인등록기관명 및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법인 소재지		
	LEI 최초 부여일		
	LEI 정보 수정일		
	LEI 폐기일 및 사유 등	Level 2 (협의중)	금융당국만 이용 가능
	법적 형태, 유효일자, 법인 상태		
	조직 형태, 산업분류코드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등		
최종 모회사 정보			

## II. 국제논의 동향

### 1. 추진경과

법인식별기호(LEI)와 관련된 글로벌 LEI 시스템(Global LEI System, 이하 “GLEIS”)은 '11.10월 칸느 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이 합의되었다. 개별 금융회사가 다양한 이름 또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정보 취합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J.P.Morgan은 각종 금융거래에 Morgan, JP Morgan, JPM 등 다양한 이름으로 참여함으로써 J.P.Morgan 이라는 단일 법인(Legal Entity)<sup>2)</sup>의 금융시장에서의 익스포져 총합을 파악하기 어려

2) 금융거래와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인(Legal Entity)의 포괄범위는 가능한 한 넓게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금융중개인, 은행과 금융회사, 주식·채권·자본 구성을 위한 증권 등을 발행하는 독립체,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독립체, 주식이나 증권거래를 하는 모든 독립체, 법인 실체나 집단투자협약 형태로 설립된 뮤추얼 펀드, 연금 기금, 대안 투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투자회사(엄브렐라 펀드, 엄브렐라 구조의 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도 해당),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모든 독립체와 계열사, 자회사, 지주회사, 금융거래 상대방 등이 구체적인 예로 제시되었다.

왔다.

G20 정상들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LEI 전문가 그룹(Expert Group)과 산업자문패널(Industry Advisory Panel)을 각각 구성하여 GLEIS 구축 권고안을 마련하였다<sup>3)</sup>. 구체적으로는 GLEIS 지배구조, 운영모델, LEI 적용 범위, 그리고 자금조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sup>4)</sup>.

'12.6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서는 GLEIS 설립·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인 LEI 최상위 원칙(High Level Principles)을 포함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작성한 권고안이 승인되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받은 GLEIS 관련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12.6월에 LEI 이행그룹(Implementation Group)을 구성하였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행그룹에 참가하여 GLEIS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하였다.

이행그룹에서는 GLEIS의 지배구조로서 각국 감독당국이 참가하는 규제감독위원회(Regulatory Oversight Council, 이하 "ROC")를 설립하는 헌장(Charter)과 관련 법적 문서(by-laws)를 준비하여 G20 재무장관회의('12.11월)에 보고·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규제감독위원회(ROC)가 '13.1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규제감독위원회(ROC)는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을 실제로 운영할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의 민간기구 구성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글로벌 LEI 재단(Global LEI Foundation, 이하 "GLEIF")이 '14.6월에 출범하였다.

향후 실제적인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은 GLEIF, 특히 이사회가 주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GLEIF가 소재하는 스위스 법률이 재단법인의 경우 최종책임은 이사회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감독위원회(ROC)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GLEIS 운영책임은 GLEIF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금융거래와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인(Legal Entity)의 포괄범위는 가능한 한 넓게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금융중개인, 은행과 금융회사, 주식·채권·자본 구성을 위한 증권 등을 발행하는 독립체,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독립체, 주식이나 증권거래를 하는 모든 독립체, 법인 실체나 집단투자협약 형태로 설립된 뮤추얼 펀드, 연금 기금, 대안 투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투자회사(엄브렐라 펀드, 엄브렐라 구조의 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도 해당),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모든 독립체와 계열사, 자회사, 지주회사, 금융거래 상대방 등이 구체적인 예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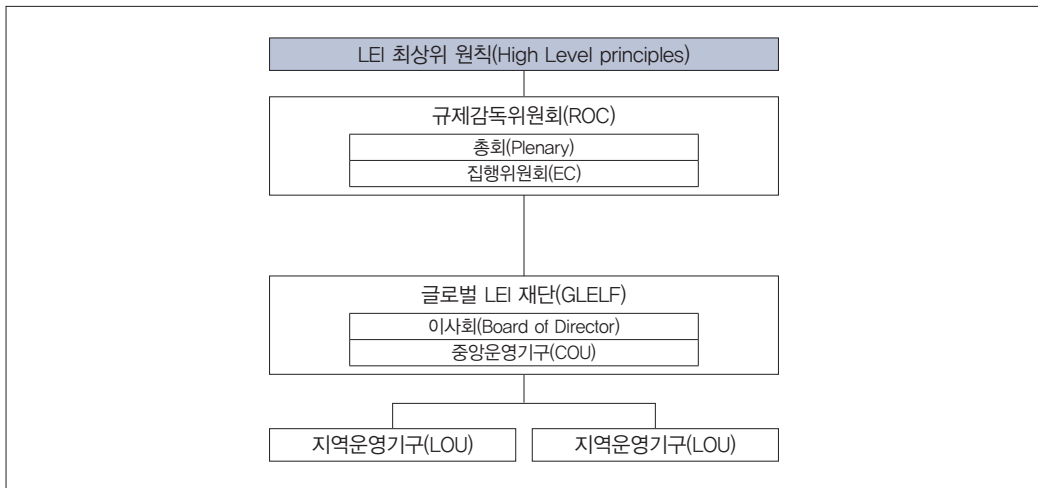
4)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 그룹에 금융감독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산업자문패널은 금융 및 비금융권에 종사하는 정보처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참여하였다.

## 2. 글로벌 LEI 시스템(GLEIS) 구조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감독당국 등으로 구성되는 규제감독위원회(ROC)이다. ROC은 GLEIS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GLEIS 실제 운영기구를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는 비영리재단(non-profit foundation)으로서 민간기구인 글로벌 LEI 재단(GLEIF)이다. 동 재단은 실제로 GLEIS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연방제형 영업모델(federated business model)을 적용한다.

〈그림 1〉 글로벌 LEI 시스템(GLEIS) 구조



자료: FSB

### 가. 규제감독위원회(ROC)

규제감독위원회(ROC)는 GLEIS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의 감독당국과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GLEI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plenary)와 운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36개국(감독당국, 중앙은행 등)과 국제기구(IMF 등) 등에서 총 58개 기관이 참여하며 운영위원회는 15개국(감독당국, 중앙은행 등)과 국제기구(IOSCO 등) 등에서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의 경우 총회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그리고 운영위원회에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규제감독위원회(ROC)는 GLEIS 운영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GLEIS의 전략 수립, 기술 및 운영기준 승인 등을 포함한다. ROC 회원으로는 GLEIS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감독당국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개방적인 회원자격으로 인해 총회 회원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측면의 감독업무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ROC의 많은 업무가 운영위원회에 의해 이뤄짐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지역적·국가적 균형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운영위원회 멤버를 지역별로 할당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LEI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최소 참여 멤버(국가)로 북미·유럽·아시아는 3명(2국가), 기타지역은 2명(2국가) 등으로 총 11명(8개국가) 배분하였다. 향후 GLEIS가 충분히 정착하여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운영될 경우 총 인원은 23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3〉 초기 ROC 운영위원회 구성 요건

지역	정상상태에서의 멤버수	최소 참여멤버 정족수	최소 참여국가 정족수
북미(멕시코, 카리브해 지역 포함)	5	3	2
유럽(CIS 포함)	5	3	2
아시아(중동 제외)	5	3	2
기타 지역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5	2	2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기준제정기구	3	0	0
총계	23	11	8

자료 : FSB

## 나. 글로벌 LEI 재단(GLEIF)

규제감독위원회(ROC)는 '13.1월에 공식 출범하였으나 ROC 위임을 받아 실제로 GLEIS를 운영할 글로벌 LEI 재단(GLEIF)은 '14.6월에야 출범하였다. 이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GLEIF 이사회 구성원(BOD)을 지명·승인('14.1월) 하였으나 GLEIF 소재지인 스위스(Swiss)에서 재단설립 심사 및 세금면제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GLEIF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Board of Director, 이하 "BOD"), 그리고 집행기관인 중앙운영기구(Central Operating Unit, 이하 "COU") 및 지역운영기구(Local Operating Unit, 이하 "LOU")로 각각 구성된다.

〈표 4〉 GLEIF 이사회 구성

이름	국적	회사(직위)
Sergio Chodos	Argentina	IMF (Alternate Executive Director)
Bo Chen	China	China Financial Computerisation Corp. (General Manager)
Wolfgang Koenig	Germany	Goethe University Frankfurt (Head of Chair of Info systems)
Ravi Mathur	India	GS1 India (CEO)
Hiroshi Kawagoe	Japan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General Manager)
Hyoung-Seok Lim	Korea	Korean Institute of Finance (Research Fellow)
Gerard Hartsink	Netherlands	CLS Group Holdings (CEO) (Nominee as Chair of the GLEIF)
Nabil Al Mubarak	Saudi Arabia	Saudi Credit Bureau (CEO)
Arthur Cousins	South Africa	International Payments Framework Association (CEO)
Bruno Schutterie	Switzerland	Bank Julius Baer (Strategic Procurement)
Ayhan Keser	Turkey	Albaraka Turk Katilim Bankasi (Executive Vice President)
Chirs Taggart	UK	OpenCorporations (CEO)
Howard Edelstein	USA	Advent International (Operating Partner)
Jefferson Braswell	USA	Tahoe Blue Ltd (Founding Partner)
Robin Doyle	USA	JPMorgan Chase (MD Corporate Regulatory Strategy and Policy)
Tim Smucker	USA	JM Smucker Company (Chair)

자료 : FSB

GLEIF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BOD)는 대륙별 배분을 통해 13개국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는 규제감독위원회(ROC)의 집행위원회에 참여하는 국가중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의 민간인이 아시아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다.



GLEIF 이사회는 GLEIF의 공식적인 출범 이후 중앙운영기구(COU) 대표로 Stephan Wolf<sup>5)</sup>를 지명(7.14일) 하는 한편 GLEIF 로고를 선정하는 등 활동업무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COU의 자체 업무 및 외부 아웃소싱업무 등의 포괄범위, COU와 지역운영기구(LOU)가 체결할 계약서 내용, GLEIF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비즈니스모델 작성 등이 포함된다.

### 〈그림 2〉 글로벌 LEI 재단(GLEIF)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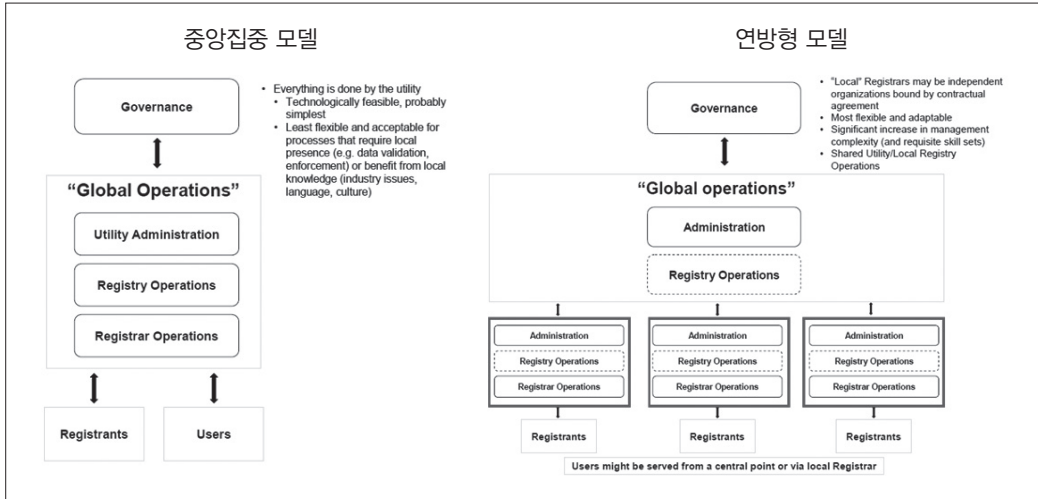
자료: GLEIF

집행기관중에서 중앙운영기구(COU)는 기술적으로 중앙 시설(platform)을 관장하고 통일된 글로벌 운영기준과 프로토콜(protocol)을 개발한다. 지역운영기구(LOU)는 COU와의 계약을 통해 GLEIS에 참여하고 관할구역(국가별 또는 대륙별 등)에서의 LEI 등록·승인·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집행기관의 운영모델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집중 모델과 연방제형 모델이 논의 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연방제형 모델이 선택되었다. 중앙집중 모델은 하나의 글로벌운영체제(single global utility)를 통해 모든 기능(등록, 정보확인, LEI 발행, 인증 등)을 통합 수행하는 반면, 연방제형 모델은 각국 및 지역별로 LEI를 운영하되, 이들이 통합·관리되도록 공통의 중앙운영 접속체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5) 중앙운영기구 대표로 지명되기 이전까지는 유럽의 정보제공업체(Interactive Data Managed Solutions AG) 기술담당책임자(Chief Technology Officer)로 근무하였다.

〈그림 3〉 중앙집중 모델(centralized model)과 연방형 모델(federated model) 비교



자료: FSB

#### 다. 예비적 지역운영기구(Pre-LOU)

미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부터 이미 LEI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체적인 인식기호를 발급하여 왔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 Trading Commission, 이하 "CFTC")는 자체적으로 발급한 CICI<sup>6)</sup>를 이용하여 스왑거래 내역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ading Repository)에 보고하도록 의무화(12.8월) 하였다. 현재까지 전세계 4만개 이상 법인에 대해 CICI를 발급하였으며, 한국법인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 CFTC는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향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CICI 발급기관인 DTCC/SWIFT를 미국 내 지역 운영기구(LOU)로 전환하고 기발급 CICI를 LEI로 전환하였다.

6) CICI(The CFTC Interim Compliant Identifier, 이하 "CICI")는 미국 예탁결제원(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orations, 이하 "DTCC")과 세계은행 간 금융전자 통신기구(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이하 "SWIFT")가 발급하는 표준법인인식부호임. CICI의 경우 구성(20자리수), 체계 등이 LTR와 동일하다.

〈표 5〉 Pre-LOU 지정 현황('14.6월 기준)

Pre-LOU	국 가	유 형	Prefix
WM Datenservice	독일	정보 제공사	5299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프랑스	통계경제 연구소	9695
CI CI utility (DTCC/SWIFT)	미국	청산결제 업무 수행	5493
Takasbank	터키	예탁결제 업무 수행	7890
London Stock Exchange	영국	거래소	2138
Irish Stock Exchange	아일랜드	거래소	6354
Russia National Settlement Depository(NSD)	러시아	예탁결제 업무 수행	2534
Poland Krajowy Depozyt Papierów Wartościowych S.A. (KDPW)	폴란드	예탁결제 업무 수행	2594
Dutch Chamber of Commerce (KvK)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7245
Registo Mercanti del Reino de España	스페인	상업등록소	9598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 of Finland (PRH)	핀란드	특허등록청	7437
Centrální depozitář cenných papírů, a.s	체코	예탁결제 업무 수행	3457
Unione Italiana per le Camere di Commercio, Industria, Artigianato e Agricoltura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8156

유럽의 경우도 유럽증권감독당국(ESMA)이 '13.8월부터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 보고에 LEI 사용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WM Datenservice(독일) 등을 통해 LEI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체 인식기호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감독위원회(ROC)는 '13.10월 이후부터 각 국가에서 발급하는 인식기호 발급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비적 지역운영기구(Pre-LOU)로 지정하고 있다. Pre-LOU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ROC 회원국 감독당국의 승인(sponsor)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ROC가 '13.7월에 발표한 기준<sup>7)</sup>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이 '14.6월에 공식 출범함에 따라 규제감독위원회(ROC)는 향후 글로벌 LEI 재단(GLEIF) 이사회와 협의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Pre-LOU를 공식적인 지역운영기구(LOU)로 전환시키고 Pre-LOU가 발급한 Pre-LEI를 공식적인 LEI로 각각 인정할 계획이다.

7) 구체적인 내용은 ROC(2013) 참조

### Ⅲ. 향후 과제

#### 1. LEI 사용 범위 확대

향후 법인식별기호(LEI)가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거래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LEI 사용 의무화 부과와 함께 개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LEI 사용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외거래 파생상품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등 주요국이 스왑거래를 거래정보저장소(TR) 앞 보고 시 LEI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예비적 지역운영기구(Pre-Lou)가 발급한 LEI 건수는 '14년중 예상되는 글로벌 LEI 발급건수(250,000)의 51.8% 수준인 129,600건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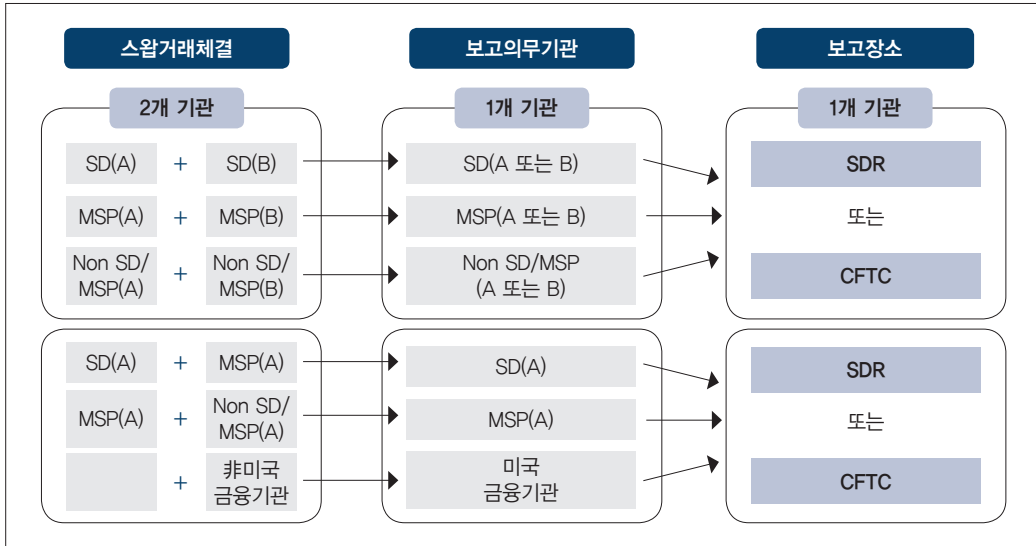
미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7월 Dodd-Frank Act이 제정되면서 장외파생상품 보고 의무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이하 "CFTC")가 Dodd-Frank Act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감독규정(Part 45)를 최종 확정('12.1월)하여 CFTC 관할에서 이뤄지는 모든 스왑거래의 당사자에 대해 거래내역을 법인식별기호(LEI)를 사용하여 스왑데이터 저장소(Swap Data Repositories, 이하 "SDR")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스왑거래 당사자는 주요 은행 딜러인 스왑딜러(SD)와 주요 스왑참가자(MSP)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주요 스왑참가자는 스왑딜러는 아니지만 스왑시장에서 중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해당 포지션이 금융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거래당사자 위험을 가진 자, 또는 자본액에 비해 높은 레버리지 위험을 가진 금융회사 등이 해당된다.

한편, 스왑거래 보고대상은 체결정보(creation data)와 유지정보(continuation data) 등이다. 이 중에서 체결정보는 스왑의 기본 경제적 계약조건과 법적 확인을 포함한 모든 계약조건을 포함한다. 또한 유지정보는 신용스왑과 주식스왑의 경우 라이프사이클 접근방식에 따라 스왑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라이프사이클 사건(체결, 갱신, 종료 등)을 보고한다. 특히 이자율, 통화 및 기타 상품 스왑은 모든 기본 스왑 조건 및 변동사항을 매일 보고하며, 자산 종류별 평가 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스왑거래의 보고주체는 보고대상 정보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다. 예를 들면, 스왑딜러(SD)와 주요 스왑참가자(MSD) 간의 거래에서는 스왑딜러가, 주요 스왑참가자와 기타 참가자 간의 거래에서는 주요 스왑참가자가, 그리고 미국 금융기관과 비미국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모두 스왑딜러/주요 스왑참가자 이거나 또는 모두 기타 참가자인 경우 등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보고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4〉 미국 CFTC 스왑거래 보고 체계



자료: 한국거래소

유럽의 경우도 유럽증권감독당국(ESMA)이 '13.8월부터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 보고에 LEI 사용을 의무화 한 이후 금융거래 각 분야에서 LEI 사용이 점차 의무화 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유럽 보험·연금감독당국(EIOPA)은 늦어도 '16년부터는 보험회사 및 연금 등이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LEI를 사용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sup>8)</sup>.

글로벌 LEI 재단(GLEIF) 이사회에서도 각국 감독당국에게 금융회사의 감독당국 앞 각종 보고서 제출 시 LEI 사용을 의무화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LEI 사용범위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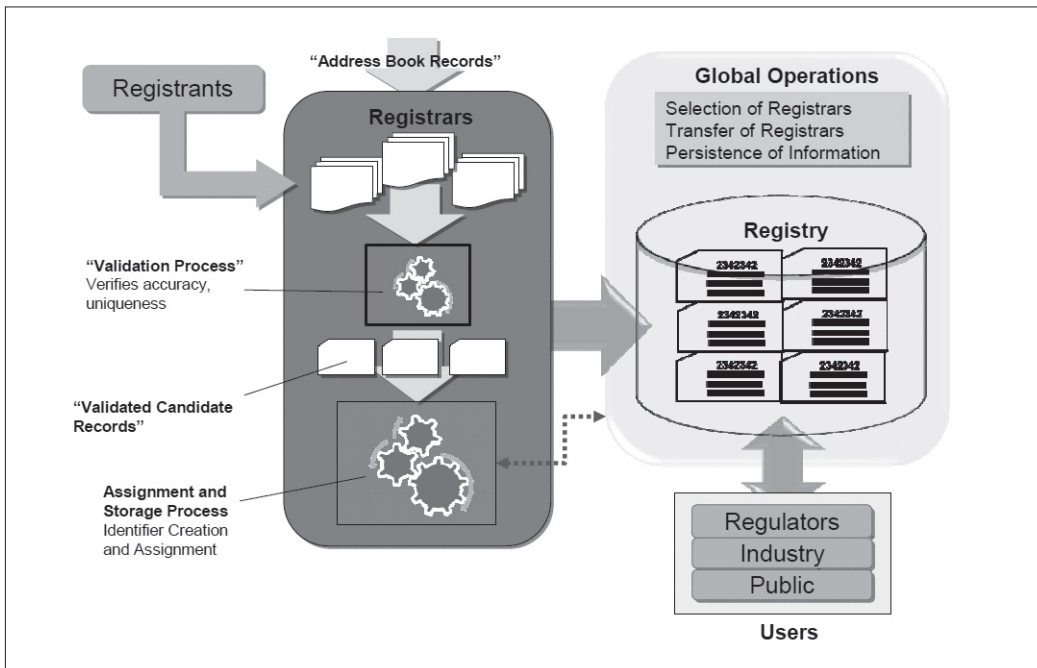
또한 금융회사도 그동안 자체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거래상대방 익스포저를 파악해 왔는데 향후 LEI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거래상대방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LEI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8) 구체적인 내용은 EIOPA(2014) 참조

## 2. 국내 지역운영기구(LOU) 과제

장외거래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LEI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외 금융회사 등과 OTC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국내법인의 경우 LEI 사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법인의 경우 국내 LEI 발급기관이 없을 경우 해외 LEI 발급기관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14.4월에 한국예탁결제원을 국내 지역운영기구(LOU)로 지정하였다.

〈그림 5〉 지역운영기구(LOU)와 중앙운영기구(COU)와의 관계



자료: FSB

국내 지역운영기구(LOU)가 직면하는 과제는 초기 시점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완료하는 것이다. 둘째는 LEI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LEI 발급이라는 동일 비즈니스를 수행하게 될 해외 LOU와의 전략적 관계정립 측면이다.

## 가. 효율적 시스템 구축

국내 지역운영기구(LOU)에게 주어진 현안 과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규제감독위원회(ROC)가 발표한 주요 원칙<sup>9)</sup> 등이 반영된 시스템 구축 여부이다.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확보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배구조(governance)를 확립하여야 한다. 공적 데이터(public data)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LOU는 민간이 공적 데이터에 접근(access)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해 제한(restriction)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며 LEI 데이터를 조건부로 제공하거나 기타 업무와 결합(bundling of services)되어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참조자료(reference data)의 정확성 확인(validation) 및 갱신능력(update) 보유 여부이다. 지역운영기구(LOU)는 LEI 코드 발급 시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참조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변동사유 발생 시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최초 LEI 발급 시 제공되는 참조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참조자료 변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구체적 실현방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운영기구(LOU)는 발행 LEI 코드의 유일성(uniqueness), 이동성(portability) 등을 보장하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확장가능성을 감안하여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LEI 코드의 유일성 및 배타성(exclusivity)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LEI 발급 신청 법인으로부터 다른 LOU로의 이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이관시키는 구체적 실현방법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 LEI 시스템(GLEIS) 확장 및 금융시장 혁신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에서의 국제협상력 보유 여부도 중요하다.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은 통일된 글로벌 운영기준을 따르면서도 지역별 요구사항도 반영하는 연방제(federated nature) 영업모델을 추구하는 까닭에 지역운영기구(LOU)는 GLEIS 참여기관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GLEIS 참여기관인 중앙운영기구(COU)와의 기본계약(Master Agreement) 체결 및 유지 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LEI 시스템과 관련하여 '11년에 15가지 기본원칙을, '12년에 35개 권고안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규제감독위원회는 예비적 지역운영기구와 관련하여 '13년에 6개 대원칙을, '13년에 12개원칙을 각각 발표하였다.

## 나. 수익성 확보

지역운영기구(LOU) 재원조달(funding system)은 효율적인 비영리 원가수준(efficient non-profit cost recovery model)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self-sustainable)하고 안정적(reliable)이어야 한다. 특히 초기에 시스템 구축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나 LEI 발급 수요는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어려운 까닭에 안정적인 수입확보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예비적 지역운영기구(LOU)가 부과하고 있는 LEI 발급비용('14.2월 기준)은 <표 6>에서와 같이 평균적으로 약 120 유로 수준(원화기준으로는 약 16만원)이며, 연간회비는 약 65 유로(원화기준으로는 약 9만원) 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LOU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준을 감안하여 비용구조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 LEI 재단(GLEIF)에서는 지역운영기구(LOU)가 LEI 발급과 관련하여 중앙운영기구(COU)에 지급할 비용으로 등록비(License fee)와 회원비(member credit fee) 두 종류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LEI 발급 건당 \$20을 등록비로, 그리고 \$10을 회원비로 각각 요구하고 있다.

등록비의 경우는 GLEIF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인 까닭에 매년 LOU가 COU에게 지급하며 반환이 불가능하지만, 회원비는 GLEIF의 초창기 활동에 수반되는 유동성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LOU가 1회에 걸쳐 지급하고 향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이다.

**<표 6> Pre-LOU별 LEI 비용 현황('14.6월 기준)**

Pre-LOU	국 가	등록비 (registration fee)	연간회비 (maintaining fee)
WM Datenservice	독일	150 유로	100 유로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프랑스	100 유로	50 유로
CICI utility (DTCC/SWIFT)	미국	144 유로	72 유로
Takasbank	터키	109 유로	55 유로
London Stock Exchange	영국	121 유로	67 유로
Irish Stock Exchange	아일랜드	150 유로	100 유로
Russia National Settlement Depository(NSD)	러시아	122 유로	31 유로
Poland Krajowy Depozyt Papierów Wartościowych S.A. (KDPW)	폴란드	115 유로	58 유로



Pre-LOU	국 가	등록비 (registration fee)	연간회비 (maintaining fee)
Dutch Chamber of Commerce (KvK)	네덜란드	150 유로	100 유로
Registro Mercanti del Reino de España	스페인	100 유로	50 유로
National Board of Patents and Registration of Finland (PRH)	핀란드	110 유로	70 유로
Centrální depozitář cenných papírů, a.s	체코	70 유로	35 유로
Unione Italiana per le Camere di Commercio, Industria, Artigianato e Agricoltura	이탈리아	100 유로	50 유로

자료: EIOPA(2014)

'14년의 경우 LOU가 COU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GLEIF는 전체 LOU가 '14년중 발급할 LEI 규모를 250,000건으로 추정('14.1.1일기준)<sup>10)</sup>하고 각 LOU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개별 LOU의 발급규모를 산출한다. 예를 들면, 국내 LOU가 발급한 LEI 비중이 전체 LOU가 발급한 LEI의 10%를 차지한다고 추정될 경우 국내 LOU 발급 건수는 25,000건(=250,000 x 0.10)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국내 LOU가 부담하여야 하는 등록비는 \$500,000(=25,000 \$20), 회원비는 \$250,000(=25,000 x \$10)으로 각각 계산된다. 국내 LOU는 '14년중 부담해야 하는 총 \$750,000 비용을 일시불(payment in full) 또는 4번으로 분할(installments)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GLEIF 제안에 대해 Pre-LOU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등록비와 관련하여서는 연초의 추정치가 아닌 전분기 실적치(previous quarter activity)에 근거하여 비용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14년의 비용부담은 GLEIF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6월 이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회원비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이자 및 환급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Pre-LOU 요구에 대해 글로벌 LEI 재단(GLEIF) 이사회에서는 회원비 관련 요구는 수용한 반면, 등록비 관련 요구는 글로벌 LEI 시스템(GLEIS)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금조달구조(funding plan)가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규제감독위원회(ROC)도 동의하였다. 국내 LOU도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경우 동일한 구조 하에

10) 연초 추정치에 근거하여 납부된 비용은 연말에 실적치에 근거하여 사후정산 된다. 연말 정산에 따른 과부족은 익년도 부담에 반영되어 조정된다.

서 중앙운영기구(COU)에 비용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자금계획에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해외 LOU와의 전략적 관계 유지

국내 지역운영기구(LOU)는 글로벌 LEI 시스템(GLIES)이 연방제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중앙운영기구(COU) 및 기타 LOU 등과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LEI 발급이라는 동일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해외 LOU와 경쟁하여야 하는 상황에도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LOU는 국내 LEI 발급 수요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아시아, 나아가 유럽 및 아메리카 등 글로벌 LEI 발급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비즈니스 플랜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동안 해외 LOU를 통해 LEI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던 국내 법인으로 하여금 LEI를 국내 LOU로 이관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LOU가 LEI에 수반되는 참조자료의 정확성 확인과 갱신능력이 있어 해외 LOU 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국내 법인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는, 국내 LEI 발급 수요자가 해외 LOU를 활용하지 않고 국내 LOU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특히 미국 등 일부 Pre-LOU는 예외적으로 제3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국내 법인과 거래를 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 법인을 대신하여 미국 Pre-LOU에 LEI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국내 법인은 국내 LOU에 LEI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국내 LOU 존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내 LOU 활용 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플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해외 LOU와의 전략적 관계의 구체적 형태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국내 LOU로 이관 받아야 할 LEI 발급이 많은 해외 LOU(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전략적 협조관계로, 동아시아 지역의 신규 LEI 발급 수요와 관련해서는 아시아 지역 LOU와 경쟁관계의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 참고문헌

- 임형석(2014), “법인인식부호(LEI) 국제논의 동향과 시사점,”계간 금융동향 24(1), 2014년 봄, 한국금융연구원
-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2014), Consultation Paper on the proposal for Guidelines on the use of the Legal Entity Identifier(LEI), EIOPA-CP-14-037
- Financial Stability Board(2012), A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r Financial Markets, 8 June 2012
- Regulatory Oversight Council(2013), Principles to be observed by Pre-LOUs that wish to integrate into the Interim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System, July 2013

## 참고문헌

- 이철송, 「2011 개정상법 축조해설」, 박영사, 2011.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0판, 박영사, 2012.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8판, 박영사, 2010.
- 윤영신, “사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주주와 사채권자의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上」, 박영사,
- 伊籐 眞, 西岡清一浪, 桃尾重明, 「新しい会社更生法」, 有斐閣, 2004.
-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証券部, 「銀行実務詳説 証券」,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1.
- 東京弁護士會, 「入門 新会社更生法」, ぎょうせい, 2003.
- 西宮章夫, 「会社再生の理論・實務と書式」, 民事法研究会, 2006.

